

제346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28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현안보고
 -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관련

상정된 안건

-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성원·김성태·김세연·문진국·신보라·엄용수·유기준·정유섭·권성동·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4
-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노웅래·조승래·이원욱·위성곤·문미옥·강훈식·민병두·김영주·박주민·이용득·전현희·이훈·박정·김철민·정재호·기동민·김종민·최운열·이철희·전재수·표창원·권칠승·서형수·박광온·유동수·박찬대·신창현·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4
-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정우·안규백·이학영·박재호·박홍근·전혜숙·민병두·김영진·황희·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4
-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권성동·김성원·김성태·김세연·문진국·신보라·엄용수·유기준·정유섭·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4
- 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박인숙·장석춘·박찬우·신상진·박대출·정갑윤·김학용·이종구·경대수·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4
- 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문진국·김승희·김규환·신보라·김순례·홍문중·윤종필·김상훈·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4
- 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하태경·윤종필·송희경·이종명·임이자·김규환·박덕흠·정태욱·김선동·정갑윤·박명재·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4
-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삼화·김정우·김해영·남인순·박남춘·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어기구·이인영·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4
-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 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김삼화·김중로·김현권·박남춘·박주민·박홍근·서형수·손금주·신창현·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용득·임종성·전해철·전혜숙·조정식·한정애·홍영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4
-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정갑윤·유기준·장석춘·이종명·김용태·정성호·이종배·이철규·김현아·김세연·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4
- 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5
-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조

배숙·박선숙·황주홍·최도자·김광수·소병훈·박재호·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현권·민병두·박주민·서형수·소병훈·안규백·원혜영·윤호중·이동섭·이석현·이종걸·임중성·전현희 의원 발의)(계속) 5

1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손금주·유승민·김삼화·윤종필·전희경·주호영·김석기·박명재·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5

2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박덕흠·이양수·이철규·정태욱·성일중·송석준·이철우·김종태·박대출·함진규·김도읍·이주영·김정재·이명수·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5

2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후덕·이찬열·인재근·김현미·백재현·안규백·문희상·홍영표·윤관석·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5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욱·김태흠·김명연·성일중·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5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정세균·강창일·윤후덕·이찬열·박주선·홍문표·조정식·황영철·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5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석준·김순례·김승희·곽대훈·김광림·정종섭·윤재욱·이종배·김기선·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5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욱·김태흠·홍철호·김명연·성일중 의원 발의)(계속) 5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김광수·권은희·송기석·채이배·신용현·김관영·김중로·오세정·김경진·이용주·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5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이종명·문진국·권석창·김용태·김현아·엄용수·박명재·여상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5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성태·심상정·김종태·김석기·김도읍·김종훈·홍의락·박성중·정성호·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5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종희·김동철·정인화·최도자·이동섭·송옥주·이용득·홍영표·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5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3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3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철민·우원식·이인영·이재정·이찬열·서영교·윤영일·이학영·김경협·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5

3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광림·문진국·신보라·이종구·이채익·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진석·조경태·조원진·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6

4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6

42. 현안보고 15

-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관련

(14시09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일주일간 환경 및 고용노동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현장검증 결과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사항이 많은 만큼 가급적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김성원 · 김성태 · 김세연 · 문진국 · 신보라 · 엄용수 · 유기준 · 정유섭 · 권성동 · 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노웅래 · 조승래 · 이원욱 · 위성곤 · 문미옥 · 강훈식 · 민병두 · 김영주 · 박주민 · 이용득 · 전현희 · 이훈 · 박정 · 김철민 · 정재호 · 기동민 · 김종민 · 최윤열 · 이철희 · 전재수 · 표창원 · 권칠승 · 서형수 · 박광온 · 유동수 · 박찬대 · 신창현 · 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정우 · 안규백 · 이학영 · 박재호 · 박홍근 · 전해숙 · 민병두 · 김영진 · 황희 · 김영주 의원 발의)(계속)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권성동 · 김성원 · 김성태 · 김세연 · 문진국 · 신보라 · 엄용수 · 유기준 · 정유섭 · 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박인숙 · 장석춘 · 박찬우 · 신상진 · 박대출 · 정갑윤 · 김학용 · 이종구 · 경대수 · 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김승희 · 김규환 · 신보라 · 김순례 · 홍문종 · 윤종필 · 김상훈 · 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하태경 · 윤종필 · 송희경 · 이종명 · 임이자 · 김규환 · 박덕흠 · 정태옥 · 김선동 · 정갑윤 · 박명재 · 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삼화 · 김정우 · 김해영 · 남인순 · 박남춘 · 서영교 · 서형수 · 송옥주 · 신창현 · 어기구 · 이인영 · 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병원 · 김삼화 · 김중로 · 김현권 · 박남춘 · 박주민 · 박홍근 · 서형수 · 손금주 · 신창현 · 유승희 · 유은혜 · 윤후덕 · 이용득 · 임종성 · 전해철 · 전해숙 · 조정식 · 한정애 · 홍영표 · 황희 의원 발의)(계속)
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정갑윤 · 유기준 · 장석춘 · 이종명 · 김용태 · 정성호 · 이종배 · 이철규 · 김현아 · 김세연 · 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최도자 · 김동철 · 박주선 · 박광운 · 이춘석 · 장정숙 · 강창일 · 김관영 · 이용주 · 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동섭 · 조배숙 · 박선숙 · 황주홍 · 최도자 · 김광수 · 소병훈 · 박재호 · 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현권 · 민병두 · 박주민 · 서형수 · 소병훈 · 안규백 · 원혜영 · 윤호중 · 이동섭 · 이석현 · 이종걸 · 임종성 · 전현희 의원 발의)(계속)
1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손금주 · 유승민 · 김삼화 · 윤종필 · 전희경 · 주호영 · 김석기 · 박명재 · 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2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 · 박덕흠 · 이양수 · 이철규 · 정태욱 · 성일종 · 송석준 · 이철우 · 김종태 · 박대출 · 함진규 · 김도읍 · 이주영 · 김정재 · 이명수 · 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2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윤후덕 · 이찬열 · 인재근 · 김현미 · 백재현 · 안규백 · 문희상 · 홍영표 · 윤관석 · 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유기준 · 정갑윤 · 권성동 · 김성원 · 정태욱 · 김태흠 · 김명연 · 성일종 · 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 · 이개호 · 정세균 · 강창일 · 윤후덕 · 이찬열 · 박주선 · 홍문표 · 조정식 · 황영철 · 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김현아 · 송석준 · 김순례 · 김승희 · 곽대훈 · 김광림 · 정종섭 · 윤재욱 · 이종배 · 김기선 · 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유기준 · 정갑윤 · 권성동 · 김성원 · 정태욱 · 김태흠 · 홍철호 · 김명연 · 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장정숙 · 김광수 · 권은희 · 송기석 · 채이배 · 신용현 · 김관영 · 김중로 · 오세정 · 김경진 · 이용주 · 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 · 이종명 · 문진국 · 권석창 · 김용태 · 김현아 · 엄용수 · 박명재 · 여상규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김성태 · 심상정 · 김종태 · 김석기 · 김도읍 · 김종훈 · 홍의락 · 박성중 · 정성호 · 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김종희 · 김동철 · 정인화 · 최도자 · 이동섭 · 송옥주 · 이용득 · 홍영표 · 김광수 · 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철민 · 우원식 · 이인영 · 이재정 · 이찬열 · 서영교 · 윤영일 · 이학영 · 김경협 · 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3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광립·문진국·신보라·이종구·이채익·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진석·조정태·조원진·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4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4시11분)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41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에 환경소위원회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환경소위원회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2일과 11월 24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6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을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불합격한 자동차를 환불 또는 재매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현물로 반납해야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배출가스보증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으로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금전 반납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과 이용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 간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조정협의체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장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과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구매자 본인인증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자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생태계 현황 조사와 건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장의비 등을 그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것이나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공원 내 취사행위 등에 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나 이미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현행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사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만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현재 환경부 소관 법정계획을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계획 등의 국회 보고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영업 재개 시 기상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현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기관 명칭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술원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소위원장 하태경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3일과 11월 25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기적인 출연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장회사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환매수를 대비하여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금원을 출연할 수 있다는 취지가 분명해지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남춘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비용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 김상훈 의원, 김도읍 의원, 김삼화 의원,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연체금을 1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김기선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산재보상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증 남성 장애인 1명 고용 시 이를 모회사 고용인원의 0.5명으로 간주하던 것을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모회사 고용인원 산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의 신설·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문을 간결화하는 등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에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인자는 채용과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남춘 의원, 노웅래 의원, 박주선 의원, 조정식 의원, 김삼화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소위원회 및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채용절차법에서 소위 채용의 강요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를 못 하게 해 주신 점 또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를 못 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사진 부착을 못 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이 본인 확인 등의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사진을 부착토록 하고 지금은 또 계속 오프라인으로 붙인다고 보다는 온라인상에 컴퓨터로 자기 사진을 따다 붙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조금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제외를 해 주시고 공공부문이나 또는 일반 채용 과정에서 사진 부착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이것은 좀 확인해서 차기에 이것은 한번 좀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이고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안 보고 또 면접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도 안 한 상태에서 사진을 보고 만약에 선별을 한다든가, 사진만으로, 서류전형에서. 그러면 그냥 그 단계에서 아예 그것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용모 때문에?

사실 용모가 문제가 되어서 취업을 못 한다 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 부착 얘기를 저는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모를 가지고 불이익이 있다라면 방지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사진은 말 그대로 본인 확인이라는 큰 목적이 하나 더 부가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팀이나 또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들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다음 입법 때 한번 저희들이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만 제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런데 이미 소위에서 차관님도 참석하고,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고는 했었습니다, 소위에서는.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이상돈 위원님.

○**이상돈 위원** 면접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또 면접은 면접대로 하게 되면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게 실익이 있나요? 나는 좀 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본인 확인 과정이 끝난 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사진 부착이 본인 확인이라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깊이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큰 목적이 있어서 한 번만 유예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직종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소방관 뽑을 때는 근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을 하는데 기업도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직종에 따라서는 체력 같은 것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도, 그것은 뭐 별도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이라고……

○**이상돈 위원** ‘아니한’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차피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력서의 사진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필요까지 있는가, 그건 선택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 그러면 우리 소위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제가 좀 하고 소위원장은 나중에……

○**위원장 홍영표** 예,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사진 문제를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 취업준비생들 받을 텐데 만약에 이것저것 규제를 자꾸 가하면 정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으로 되게 많이 돌릴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취업준비생들이 피해를 엄청 보게 돼요, 특히 지방대학 출신들은.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문제를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조금 자율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지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우리 소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 河泰慶** 소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지금 민간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인터뷰 등 소위 탈스펙 면접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게 일종의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아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법적 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이런 세대가 있고 특히 여성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이력서 사진을 찍는데 십수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이런 우리 외모지상주의적 세대와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통과시키자, 하지만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또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해 보자 하는 것이고, 아까 노동부차관님 말씀대로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환노위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말씀대로 노동부가 앞으로 사진을 가지고 차별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홍영표** 한정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본인 확인과 사진과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장관께 그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상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붙이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하고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그런데 본인 확인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이나 어쨌든 여하한 다른, 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력서상에 있는 사진과 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인이다라고 관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장님, 한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자격시험도 사진을 인터넷에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채용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무원들과 저희들이 한 3개월 이내에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용모라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적인 요소가 훨씬 큰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선정해 주는 식으로, 3개월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알겠고요.

저는 지금 원안대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사진 부착이요, 저희가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인데 서류전형 과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 거의 100 대 1 이러면 거기서 몇 배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서류로 다 탈락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 같은 것으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얼굴 보고 그렇게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태경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모 지상주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 데서…… 그다음 단계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 확인은 당연히 시험 보러 가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사진 부착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서형수 위원님.

○**서형수 위원** 조금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한데 고용상 차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저는 동의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제상 연령 차별 금지, 성차별 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나이가 나오고 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사진이라는 것이 차별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까 하태경 간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입사 원서에다가 사진 하나 하는 데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것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것은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고용의 기회에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그 차별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펙 쌓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력서 하나를 꾸미고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수십만 원이 되는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 옷을 빌려야 되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머리를 해야 되고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에 놓여 있다,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데 그러한 준비 과정이

과연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표준이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이 그 표준이력서를 앞장서서 실천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공공기관에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 공감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표준이력서상에도 사진 부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표준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제외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하셨던 근거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이, 차관님께서 그날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어떤 규칙과 개입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과도한 개입이 없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취업준비 과정에서의 고통을 놓고 볼 때 이것은 그 정도는 개입을 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용모차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적어도 서류전형에서는 자신의 실력대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죽어도 안 되는 문제로 고용노동부 내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법안소위에서 전원 합의했던 이 내용들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잘 다루어지고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아까 표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정미 위원 표준이력서요.

○위원장 홍영표 표준이력서 거기에는 사진 부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우리가 예산안 가지고도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산소위에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많은 토론 끝에 결정된 안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전체회의에 올라왔을 때, 호남권 직업체험관 같은 게 문제가 되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예산소위

에서 논의되었던 그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추진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지적하시고 서형수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조원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법안소위의 그런 논의들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 끝에, 이 법안 가지고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사람을 뽑는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보다 큰 대의를 가지고서 말씀하셨던 의견들이 다 녹여져서 사진 부착을 금지하자라고 명기하자라는 안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 고심들이 다 반영되어서 이런 법안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안소위에서 결정된 대로 위원회 전체에서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지난 법안소위 때 사진 부착 금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온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더라도 2014년부터 아시아항공도 객실 승무원 이력서 사진란을 폐지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효성, 롯데, LG, 올해는 CJ, 이랜드도 이력서상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법으로써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표준이력서라고 하는 것도 2007년에 도입됐고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있는 이력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여 년이 지난 이제서야 조금씩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이런 변화들이 이제서야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노위원회가 청년들의 많은 취업 준비 경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여러 차원의 차별 금지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위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력서의 사진 부착 금지는 우리가 법안으로 명시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특히 또 소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셨다고 하니까 소위에서 통과된 원안을 그대로 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하태경, 강병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박순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신보라, 이용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송옥주,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주승용,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박남춘,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위성곤, 김상훈, 김도읍, 김삼화,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김기선,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한정애,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1항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은 국회법 제66조에 따라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각 법률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2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 중 업무가 과중한 영상 감독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석면피해자 판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를 배출가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이 각각 3%에서 5%,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되어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는 일각을 다투는 화학사고 현장에서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주변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에 대해 구매자의 실명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으로는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정책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해소하고 환경행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주신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 중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령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우대지원하고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의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고 제도 운영의 편리성도 제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걱정 없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의 산재 은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관행이 보다 빨리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회사주식을 일정기간 소유한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환매하도록 하는 등 회사주주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

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사협력 관계가 한층 증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으로 공단 상임이사 등의 임명 절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기상청 소관 법률안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정애 환경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로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되던 것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하고 기상측기 검정 등 업무 확대를 통해 전 주기적 R&D 성과관리 및 사업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선순환 연결구조 확립 및 기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기상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자 휴·폐업 등에 관한 신고 절차의 마련으로 민원행정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하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 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현장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순

서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 기상청장을 비롯한 현안보고와 관계없는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현안보고

-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관련

(15시00분)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박광국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광국입니다.

KEI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요청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사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2016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8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하여 9월 13일에 의견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검증과 관련하여 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박사와 해당 환경평가검토실장이며 동식물성 검토 담당인 방상원 박사가 지난 11월 2일 국회 보좌진, 원주지방환경청, 양양군, 조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검증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11월 2일에 실시한 현장검증 결과에 대하여 KEI의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는 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박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EI 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입니다.

2016년 11월 2일 합동 현장검증에 참여한 참석자의 일원으로 결과에 대하여 KEI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동식물조사 23건 가능 여부 및 2번 지주 근처 매목조사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식물조사 하루 23건 가능 여부입니다.

일단 23건 조사라는 주장의 근거는 확인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록에 있는 현장조사표의 개수에 의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는 현장검증 시 조사업체에 물어본 결과 3인이 같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동일인이 23개의 조사표를 같은 날에 각각 다른 지점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해서 아마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지리적 위치는 총 8개 지점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오색 입구 개울을 따라 시행된 어류 및 대형무척추동물 조사지점 6곳, Wa1에서부터 Wa6까지입니다. 그리고 탐문조사를 실시한 오색 입구에 위치한 국립공원 오색구조대 사무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이루어진 속초에 있는 국립공원 사무실로 확인됩니다.

오색의 조사지점 6곳은 지도를 보시면, 우선 남쪽의 오색교회 바로 앞에 Wa5 지점이 있고요, 길을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하부정류장 부지 근처에 Wa2와 Wa4가 존재를 합니다. 설악로에 있는 남설악탐방지원센터 근처 1번과 2번 지주 사이에 위치하는 Wa1과 Wa3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 지주 지나서 북북서 방향으로 개울을 따라 올라가서 3번 지주 서쪽에 위치한 Wa6 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남쪽의 Wa5로부터 북쪽의 Wa6까지는 지도상 직선거리로 약 1.8km 정도이며 길을 따라 이동하더라도 약 2km 내외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거리입니다. 네이버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실측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조사표를 보니 이 여섯 지점에서 어류와 대형무척추동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조사표가 만들어졌으며 현장검증 시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족대와 그물 그리고 대형무척추동물을 채집하기 위한 1mm 간격의 좁은 그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총 6개 지점에 대해서 총 12개의 현지조사표가 작성이 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오전에 속초에 있는 국립공원 사무실에서 5인 그리고 오후에 오색구조대 사무실에서 3인, 이렇게 총 8인에 대한 탐문조사표가 작성이 된 것으로 조사자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현장 시연을 통하여 확인 결과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련자들에게 탐문조사지를 동시에 나누어 주고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사람당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업체의 설명에 근거하여 앞서 말씀드린 6개 조사지점과 그 조사지점 사이의 이동 중에 관찰한 식생, 포유류, 양서류충류에 대하여 조사표를 각각 하나씩 추가로 작성했다고 하니 총 23개의 조사표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증 당일 처음 시작한 시간이 오후 1시경이고 마지막으로 오색교회 앞 Wa5 지점으로 도로 내려와서 처음에 하지 못한 그물 투망 시연 그다음에 오색구조대 사무실 방문까지 진행된 것이 약 오후 5시경으로 총 4시간에 걸쳐 모든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조사지점 간 총 이동거리, 조사 분량, 조사자 3인을 고려할 때 하루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분량으로 판단됩니다.

부록에 있는 조사표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담당자가 사전에 좀 더 명확하게 국회에 설명을 드렸다면 이러한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2번 지주의 매목조사에 관한 검증입니다.

첫째로 조사시간 검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2번 지주에 대한 매목조사 검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2번 지주에 대한 매목조사가 조사자 2명에 의하여 2시간 이내로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2016년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매목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매목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조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조사자에게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에 조사자 2명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40m 곱하기 40m의 조사방형구에 대한 매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방형구 전체를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2시간 동안에 조사된 수목은 1호에서 130호까지였고 이는 본안평가서의 매목조사표에 기재된 총 263호의 약 5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 설악산의 일몰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일몰시간 이내로 전체 조사방형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오후 4시부터 2명의 조사자가 추가 투입되어 총 4명의 조사자에 의한 매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몰시간에 가까워진 오후 4시 45분의 연장조사에서도 조사자들은 조사방형구 전체를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시간 이내로 2번 지주에 대한 매목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총 2시간 45분간의 조사로도 완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전체 조사방형구 면적에서 조사되지 못한 면적은 가운데 부분인 약 29%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가서의 매목조사 결과와 현지검증 시 매목조사 결과의 부합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서상에 수록된 매목조사도 및 매목조사표와 현장검증 시 작성된 매목조사도와 매목조사표를 간단하게 컴퓨터상에서 파워포인트 같은 격자가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종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표시하고 수종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개의 매목조사도를 중첩한 결과 평가서상의 수종 및 위치와 현장검증 시의 수종과 위치가 전반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장검증 시 당초 조사자들이 평가서상의 매목조사 시 조사방형구에 격자를 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수종의 위치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개의 매목조사도를 각기 다른 위치와 방위각으로 이리저리 중첩하면서 많이 일치하는 영역을 찾는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중첩한 도면 중에서 우측과 상부영역에 일부 일치하는 영역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평가서의 매목조사 결과와 현장검증 시 실시한 매목조사 결과가 서로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매목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처음 조사할 때 정확한 기준점 설정, 조사의 정밀성, 즉 존재하는 모든 수종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정확성, 나무 사이의 정확한 거리나 또는 상대적 위치 방위각 등에 있어서 미흡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한편 매목조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지침에는 있지 않은 조사이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KEI도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할 때 매목조사를 하라고 요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오색산도사업의 경우에는 아마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중에서 훼손 식생의 수준과 정도를 파악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이게 시기가 2014년 10월입니다,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작성할 때 실시한 매목조사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매목조사가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에 상부 정류장의 식물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식물들, 나무들이 훼손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사실은 매목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조건을 충족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아닙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목조사가 아니라 하여튼 정확한 산림이나 식생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훼손이 돼 있는가를 평가서 본안에서 KEI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확한 것을 하라고 한 거고요.

매목조사 같은 경우는……

○이정미 위원 아니 박사님, 잠깐만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말씀하시지요.
 ○이정미 위원 박사님, 그러니까 매목조사가 되든가 아니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가 됐든가 이래야 되는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매목조사는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확정짓기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거짓 작성된 것이 거의 사실관계로 드러나 있지 않나 싶고 그것을 대신할 만한,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다른 어떤 연구보고가 지금 있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원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생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생조사도 및 식생조사……
 ○이정미 위원 그래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해도 거기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충분한 조사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것은 안 되어 있지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매목조사라도 정확하게 해서 부대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KEI에서는 부실하다, 저는 이것이 작성됐는지조차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은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매목조사가 아니라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조사과정은 단순히 이 1건만 문제가 됐다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이럴 수 있겠지만 일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거짓 허위보고서 작성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그중의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한 개연성,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매목조사 비교표를 보시면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개의 연두색 표시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 연두색 표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D9라고 하는 지점을 보시면 원래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있는 것은 나무가 한 그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나갔을 때는 지금 몇 그루가 죽 나와 있지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6, H8 이 2개의 지점에서 두 그루나 한 그루,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여러 그루들의 나무들이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꼼꼼히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러면 나무 개수가 거꾸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각 지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에 이런 내용이 올라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여러 그루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밖에 조사를 못 했다가 아니라 이번처럼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의 나무 개수의 차이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그 당시 본안 평가서에 올라왔던 그 자료가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올린 자료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보면 69지점과 68지점에 음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현장조사에서 봤을 때는 음나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 주시면, 음나무는 나뭇가지에 저런 가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나무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것을 소홀히 봐서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가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지도 않은 나무가 본안에 적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도 현장의 실제적인 어떤 조사 없이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매목조사 면적과 관련된 시간 현황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간 현황에 있어서도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나가서 2시간 동안 현장조사를 했을 때 가능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소요시간이 3시간 가까이, 3시간 넘게, 3시간 3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것으로 수학적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2시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인 조사과정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매목조사 한 나무에는 페인트 스프레이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페인트 스프레이 표시 이번에 보셨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제가 안 올라가고 방상원 박사님이……

○이정미 위원
없었습니다. 여기 다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한 차례의 조사가 있었고 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실제로 나가지도 않았더라는 것은 실토를 한 바가 있고요.

자연영향평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성할 때 내용조차도 지금 상당히 이번 현장조사에 나갔을 때 내용과 어긋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자체는 7대 부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료 자체가 실제 조사 속에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허위보고의 의도도 상당히 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

○이정미 위원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스프레이라든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스프레이는 그날 제가 안 가고 방상원 박사가 갔지만, 일단 평가서상에는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되어 있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그

때는 안 가져 간 것으로……

○이정미 위원
없었다는 것 확인하셨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그때 내려와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나 이것은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정미 위원
아니, 사실관계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사실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2개가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정미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다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마지막에 설명한 게 오히려 혼선을 갖고 오는데요.

매목조사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지침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단 이것을 요구를 했고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목조사 자체가 일단 거짓 작성됐으면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 부분 확인하셨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현지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GPS에서 내려 받은 원본파일일 텐데, 웨이포인트(way point) 경로 트랙, 이 부분 원본 확인하셨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확인 안 했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매목조사 증빙자료에서도 일단 원본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원본 확인하셨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원본은 아니고 평가서하고 현지조사만 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럼 원본 안 보셨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서형수 위원 원본 안 보시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가지고 부산대 조경학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님 두 분한테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조금 읽어보면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 현장조사 근거야장, 조사자 이동시간 및 위치, 현장조사 시연, 조사방법, 조사결과, 제3자에 의한 동일위치 재조사 결과, 관련된 용역의 진행 순서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된 매목조사를 정리한 도면과 조사야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내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 의견하고 방금 말씀하신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하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양쪽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보시는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이것 방상원 박사님께서 갔다 온 것을 자료를 분석하니깐 도면상에서 큰 나무들 이런 것 위치는 많이 맞는데 세세하게 하는 것은 전혀 수종이라든가 수량이 잘 안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형수 위원 연구자의 양심을 걸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현장조사 없이 작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현재 입장과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래도 이 자료를 보면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아니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형수 위원 모른다고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렇게 일부러 그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서형수 위원 일부러 그린다는 자체 이쪽에서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된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해당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조차 거짓 작성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리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위 기재한 관련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거짓 작성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거꾸로 그것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거짓 작성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것을 제가 KEI 입장에서 이게 거짓이다 또는 조사가 미흡하다 이런 것을 제가 아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결론은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실제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저희가 확인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도면이 거의 조금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조금밖에 안 맞으면 미흡하게 조사가 됐는지 아니면 조사가 안 됐는지 그것은 거의 비슷한 확률일 거예요. 확률 자체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단적으로 의견을 내시냐 이거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렇다고 이게 허위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서형수 위원 허위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것은 제가 개인이 아니라 KEI 평가본부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안 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서형수 위원 미흡하게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아예 거짓으로 이루어졌을 확률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의견이시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유보를 하셔야지요. 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일단은 그 팩트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자체가.

○서형수 위원 팩트가 조사가 미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게 미흡한 것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건지 허위

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오늘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고요. 어쨌든 KEI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러 나오신 자리인데 그 현장에 가있었던 아니든 KEI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위원들께 답변을 하러 온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답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계속 답변이 되다 보면 무슨 개인 자격으로 박사님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개인 의견을 듣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충분히 KEI 안에서 보고에 대한 기준과 판단 이것을 종합해서 나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입장에 근거해서, KEI의 종합적인 입장에 근거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이정미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조사자료가 환경영향평가서 자료하고 현지조사자료하고 많이 대부분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드리는 사실관계고요.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서 진짜 대강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정미 위원 잠깐요. 미흡하다와 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미흡한 정도에 따라서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걸 보니까 ‘완벽하게 부합한다

고 보기가 어렵다,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 무슨 말장난하는 건지, 나는 이것 과학자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통상적인 환경영향평가에는 활용되지 않는데 그러면 왜 설악산 케이블카에는 했겠습니까? 뭔가 사안의 중대성에 이걸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아마 그래서 심의 때 사업자 측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이상돈 위원 환경부에서도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시꺼멓게 해서 ‘통상적인 환경영향평가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강조한 저의가 뭐예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왜냐하면……

○이상돈 위원 좀 틀렸는데 감췄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과학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 문구는 왜 넣었냐 하면 매복조사를 환경영향평가서에 한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지, 규정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상돈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도 보도를 통해서 대체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전반적인 서술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무슨 압력을 받은 건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부실로 했다, 또 심지어는 허위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증이 많은 거지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차제에 이것은 장관께 질문 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요새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제대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임기가 돼서 후임이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대체로 환경부에서 3명으로 압축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중의 1명은 환경의 ‘환’자, 히읏 발음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3명을 데리고…… 지금 시중에 말하면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새 말하는 비선라인이 환경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세

사람으로 압축됐는지 심사위원 명단, 심사자료 내가 그걸 요청하는데 이게 심사 도중이라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것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사항이에요. 이걸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세 사람 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걸 볼 때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을 지키자고 있는 건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잘못되면 촛불이 환경부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장관과 간부들이 잘 알고 있는지, 설악산 문제도 이제는 백지에서 진취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과학자면 과학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연구원 자신들이 무슨 박사 한다고 그러지만 4대강사업 때 어떻게 일했어? 할 말 있어요? 과학자가 과학자답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기본적으로 이 케이블카도 그렇고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인선 돌아다니는 말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현장보다는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KEI의 환경영향보고서 본안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산양 및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도 미흡함, 이와 더불어 최근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충실한 조사 및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환노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현장검증까지 거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KEI의 의견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환경영향에 대한 최소한 1년, 사계절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가이자 과학자인 입장에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게 바로 KEI의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일단은 매목조사의 훼손량이라든가 수목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의 7개 부대조항 중에서 환경 관련된 건 4개입니다. 산양, 법정보호종 그다음에 상부정류장 식생·식물 조사, 그다음에 마지막에 환경 모니터링인데 그 조건대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 예측 그다음에 저감방안이 마련되는 게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데 초안도 그렇고 본안도 그렇고 그게 KEI가 검토하기에는 제대로 충족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작성한 겁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지요. 정확한 평가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또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면 원주청이 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이미 알고 있으실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요구한 항목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의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환경영향평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강화할 건 강화하고 또 적절하게 할 건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도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인데 본 위원은 이미 객관성을 잃고 편파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보다는 KEI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국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런데 KEI에

동식물을 검토하시는 박사님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토사업을 할 때는 한 사업에 한 분 정도 투입이 되는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동식물 담당하시는 분, 또는 지형, 지질 검토하시는 분이 다 투입이 돼서 검토해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것하고는 각각 전공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생조사는 식생을 제일 잘 아는 식생조사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그 조사가 어떤 조건의 어떤 방법의 어떤 식으로 제대로 됐는지를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연간 검토하는 것이 한 1500건 정도 환경영향평가서랑 전략환경평가서, 소규모영향평가서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건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박광국** 송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옥주 위원** 예, 그러십시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박광국** 제가 보기로 저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검토기관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거기 또 관할지역마다 굉장히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내면 환경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쪽 지자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때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금 KEI 말씀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토의견조차도 사실은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1년, 사계절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저희들 국감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감은 그렇습니다.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죽 보고 있는데 저도 이 설악산 현장조사에 동의한 이유는 처음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기억 안 나지만 짧은 시간에 저기를 다 돌아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이 합리적 설득력이 있다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현장조사에 동의를 해서 간사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우리 환노위 입장에서는 꽤 큰 현장방문단이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이 어쨌든 식생조사 부분인데 식생조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육수조사입니다.

○**河泰慶 위원** 아무튼 확인이 되었고 또 문제 제기를 한 위원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이 아니라 반려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매목조사 관련해서는 부실한 면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고 부실한 정도가 아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판단에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위원님 한 분께서 없었던 음나무가 있는 걸로 돼 있는 걸 볼 때 이건 허위 조사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음나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이 음나무가 삼계탕 할 때 엄나무랑 같은 거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죄송합니다. 제가 전공이 그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원주청에서 오신 분 없어요? 음나무가 엄나무랑 같은 거지요? 경상도 사람은 잘 발음 안 되는, 그렇지요? 저도 가끔씩 먹으러 가는데 엄나무 삼계탕 맞지요?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예, 맞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맞습니다.

○**河泰慶 위원** 맞지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음나무, 삼계탕 엄나무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베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조사할 때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베어져서…… 왜냐하면 무단 벌채를 하는 거예요, 삼계탕에 들어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강이 난 흔적이 그 현장 부근에서 발견이 되었다…… 원주청, 맞습니까?

○원주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장 류호일 저희가 양양군에서 얘기한 바로는 그게 맞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양양군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河泰慶 위원 양양군에서 잘려진 나무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허위……

○임이자 위원 반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없던 게 있다라고 얘기……

○환경부장관 조경규 있는데 없다고, 맞습니다.

○河泰慶 위원 제 이야기 맞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맞습니다.

○河泰慶 위원 지금 거짓조사라고 주장되는 근거도 세세하게 확인을 해 보면 딱히 거짓조사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환노위에서 정말 집요하게 문제점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걸 어쨌든 여당 간사로서 완전히 반려하고 무효화하기에는 근거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도 올해는 이 정도 정리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서형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저도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표에 적시된 내용대로 완전하게 안 할 수는 있다, 부실조사는 가능하다…… 부실조사인 경우에는 보완하면 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교수 두 분도 지금 보면 분명히 현장조사를 가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확인했지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를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GPS 자료만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정확한 조사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GPS 기계를 가져가야 되고 그 GPS 내려받은 원본파일, 웨이 포인트(way point) 경로 트랙을 포함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청도 사업자에게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주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GPS 원본파일 자체를 일단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목조사 증빙자료 이것도 결국 현재 보면 보관 과정에서 원본이 소실되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 자체가 현장조사를 가지 않았더라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충분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23건에 대해서도 그냥 원래 23건 자료에 보면 현지 조사표에 조사자가 동일한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셨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서형수 위원 한 사람으로 돼 있었지요? 그게 결국은 세 사람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은 23건 중에서 자기가 한 건 8건이고 나머지 15건은 자기가 참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조사에는 참여 안 했지요? 지금 조사표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그건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대표자 이름만 썼다고……

○서형수 위원 대표자가 아니고 어차피 그 대표자가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거짓 작성의 기준 자체, 현장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것도 거짓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여한 조사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두 사람이 조사한 걸 자기가 작성했으면 이것도 거짓 작성이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그런 부분을 따져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느 쪽, 일방적으로 편을 든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일단 GPS 원본파일하고 매목조사에 대한 증빙자료 부분은 빨리 확보를 하고, 그것 확보한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흡하게 조사됐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제가 대답할까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난 9월 27일 날 저희가 1차 국감을 하고 오늘이 딱 만 2개월이 지났는데, 2개월 동안 위원님들이 설악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시간을 투입해 주셔서 가지고 계속 발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잘됐다,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과정을 거치고 가는 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훨씬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용상의 충실성도 중요하지만 과정상의 정당성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원데이터 자료를 다 내면 그게 바로 그냥 확인될 것 아니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정도 되는, 80% 정도 되는 원데이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형수 위원 그건 원데이터 아니랍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서형수 위원 GPS 원본파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이것은 보시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서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느냐 마느냐, 이것은 출장기록부 사본과 이런 걸 저희가 다.....

○서형수 위원 아니, 자꾸 똑같은 말씀 하시네. 출장기록은 출장을 가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안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 자체에?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 현장까지 간 것은 확인이 됐는데.....

○서형수 위원 아니, 포인트 자체에 그 사람이.....

○환경부장관 조경규 현장에 가서 놀았느냐, 하필이면 2번 지주목에 가서는 놀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형수 위원 아니, 포인트 자체까지 가지 않고 실내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러니까요. 실내에서 작성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형수 위원 글썄,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다면 GPS 원본파일을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렇게 비슷하게 작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형수 위원 그래서 그게 더 기술자들이 한

거라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2번 지주 근처의 매목조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장점검단이 가서 2번 지주 매목조사를 했으면 이게 다 그냥 단칼에 끝났을 건데 하필이면 그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시간, 2시간 45분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2번 지주목 주변의 매목조사가 지금까지 다섯 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연환경영향검토서 2014년 11월에 할 때 한 번 있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할 때는 그때 자료를 인용했고요, 본안 제출할 때도 그때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 내에 전체 식생 분포가 263그룹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검증 가서 했을 때는 211그룹밖에 없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단체에서 또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는 333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KEI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사기준점이나 정밀성이나 정확성이나 이런 매목조사를 보는 관점과 조사 40m, 40m 격자를 짜는 그것에 따라서.....

○서형수 위원 아니, 지금 자꾸.....

장관님, 제가 지금 부실조사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현장조사 했다는 그 걸 문제 삼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보면 하루에 지주 4개를 조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GPS 원본파일로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이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만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 그러니까요.....

○서형수 위원 글썄, 조사 부실 자체가.....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까 그것을 갖고 확인을 해서 제출한 건데.....

○서형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조사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GPS 원본파일만 확인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리고 지금.....

○서형수 위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요, 9월 27일부터 이렇게 쪽 제기된 일련의 의심을 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해 주신 것 중

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또 출장복명서도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클리어가 어느 정도 됐고,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매목조사 부분인데 매목조사 부분은 아까 KEI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환경영향평가에 기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형수 위원 자꾸 왜…… 그 문제는 아까 확인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침에 있든 없든 간에 일단 하기로 했으면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때 이게 법정 항목도 아닌데 왜 매목조사를 시켰냐라고 하면 이게 원래 다른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조사항목이 아닌데 ‘이건 식생만 가지고 하면 좀 부족하니 매목조사를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범정보호종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쪽 조사해 보니까 범정보호종은 어느 조사에서도 없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백나무가 96그루냐, 110그루냐, 54그루냐 이런 차이거든요.

○서형수 위원 자꾸 얘기를 돌리지 말고 현지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자료만 달라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 내용은 질의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조사표에 나와 있는 시간대에 그 사람들이 갔는지 그것만 확인해 달라니까요, 내용 얘기하지 말고.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에……

○서형수 위원 아니, 그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 자체를, GPS 원본파일을 안 주고 있다니까요. 확인 자료를 안 주고 있다니까……

○위원장대리 한정애 GPS 원본파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그것만 확인을 하시고요.

○河泰慶 위원 잠깐만, 지금 다른 위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GPS라는 게 핸드폰 들고 가면 그것을 확인해서, 그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GPS 기

기가 법적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GPS를 가져가야 되고 그 기록을 정부가 반드시 보관해야 되며,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제출하라 그러면 정부가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해명을 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조사표 사항에 보면 좌표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표를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산중에서 어딘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GPS 측정기를 가지고 ‘이 좌표가 어디다’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GPS 원본파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河泰慶 위원 정부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환경영향평가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식생조사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GPS 좌표도 있고, 이게 필수종목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목조사는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GPS고 이런 좌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서형수 위원 분명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서형수 위원 필수항목이 아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조사를 왜 해요? 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 범정보호종이 있느냐 또 범정보호종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또 보호할 거냐 이런 것 보기 위해서 통상적인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목조사를……

○서형수 위원 그거 하기로 한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안에 나무가 10그루가 다 있어야 된다, 55그루가 다 맞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서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자료만, 그것 사실관계만 확인해 달라니

까요.

○**河泰慶 위원** 아휴, 저희들이 답답해서 못 보겠는데,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하태경 위원님.

○**河泰慶 위원** 어쨌든 GPS 말고라도 현장 확인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 조경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사진 찍을 때 사진 나온 거라든지 출장기록서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GPS 그것을 달라고 하셔서……

○**위원장대리 한정애** 매목조사 결과표 말씀하시지요?

○**서형수 위원** 아니, 지주 조사를 하루에 4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니까요. 그 현장 확인 자료를 달라니까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혹시 보셨습니까, 이 전부 다들? 이 자료에 그게 들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서형수 위원** 지방환경청장님, 지금 양양군에다가 GPS 원본파일 요구했지요?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예, 원본파일 요구했습니다.

○**서형수 위원** 왔습니까?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위원님, GPS 좌표는요……

○**서형수 위원** 아니, 원본파일을……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저희가 현지조사표에 들어 있는 식생조사표에는 좌표가 들어갑시다만 매목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실에서 요청하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식생조사와 관련해서 ‘TM 좌표나 GPS 좌표에 대한 원본 증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것은 GPS 좌표 위·경도 표시로 조사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육수동물이라든지 일부는 조사표에 아예 적시가 되어 있고요. 동물상은 이동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기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으면 거기에 좌표가 나오고 그것을 평가서에다가 수록을 했기 때문에 평가서에 수록된 그 내용을 제출하면서, 그 GPS 좌표나 TM 좌표는 원본을 제출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샘플로는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이미 작업을 거쳐서 평가서에 다

기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본은 전체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설명과 함께 ‘이 부분은 TM 좌표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평가서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좌표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과 함께 사진 자료를 제출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목조사와 관련해서는 로 데이터를 직접 현장에 가서 수기로 적은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당일 날 가져와 가지고 평가서상에 바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하고서 일부는 소실이 됐고 70~80%는 지점별로 대부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70~80% 가지고 있는 원본을 의원실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 GPS 찍었던 원본자료는 있을 거 같아요, 그 현장에 갔으면.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GPS 좌표는……

○**서형수 위원** 지주 조사하실 때, 매목조사 할 때 GPS 원본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매목조사는 GPS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모눈종이에다가 이렇게 방위 표시하고 나무 그루를 표시합니다.

○**서형수 위원** 어쨌든 조사 위치를 정하려면 GPS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안 했다는 거지.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그러니까 매목조사는 지주를 박는 그 지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모눈종이에서 파랗게 된 그 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별히 좌표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사업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형구를 뜯 때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 밧줄 같은 걸로 세션을 나눠 가지고 모눈종이에 맞게 구획을 한 다음에 모눈종이에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기로 작성한 것을, 원본을 업체에서 70~80%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때 조사를 했던,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을 같이 수록을 해서 70~80%는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짜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조사했느냐 하는 부분은 딱딱 저희가 평가서

상하고…… 이게 한 번만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업체에서 조사한 것을 그 당일 날 내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력을, 다 워딩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넣든지 한글로 타이핑을 쳐서 평가서에다가 종합본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게 2013년, 2014년부터 시작된 조사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매목조사 부분의 원본이 제가 볼 때 한 20% 전후해서 소실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GPS 좌표나 TM 좌표는 식생조사표, 현지 조사표에는 의무사항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재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다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좌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원본 증빙을, 저희가 그것을 다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작업을 한 번 거쳐서 평가서상에 종합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장시간 경과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 전체를 위원님께 다 보여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일단 매목조사에 대한 GPS 자료는 없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아까 23개 지점에 대해서는 일단 GPS 자료는 다 있겠네요? 원본도 다 있겠네요?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예, 다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 원본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그러니까 원본 부분은 일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증빙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일단 하태경 위원님.

위원님들, 오늘은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아무튼 하고 싶은 질의는 다 하시는 날입니다.

○河泰慶 위원 마무리를 좀 하시지요,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河泰慶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매목조사 로데이터라고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건데요. 이 자료에 보면 아까 원주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모눈종이에 나무 같은 것 그리고 수기를 한

게 쪽 다 나와요. 이게 다 수기인데, 이것을 평소에 많이 가 본 사람이 현장에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다 할 수도 있다, 전문가끼리는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입증할 수 있는 게 GPS는 매목 조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증빙이라고 해서 지주 5지점, 지주 8지점, 간 시기를 보니까 10월 22일, 10월 23일, 가을이니까 단풍이 좀 떨어지고 한 시기 같아요. 설악산이니까 좀 빨리 추위가 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진 파일을 보면, 요즘 디지털로 찍으면 날짜 나오잖아요, 사진 파일에. 그러면 이 사진이 이날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지, 그게 아니면 아예 다른 곳을 조작한 사진인지, 아니면…… 이걸 어쨌든 10월 달인 것 같은데, 2014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찍어 놓은 것을 여기에 갖다 붙인 건지 뭔가 판별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확인 안 하셨어요? 이 사진 필로 찍은 거예요?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거기에 보면 날짜랑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河泰慶 위원 나오는데, 지금 사진파일, 디지털 파일이 있으면 디지털파일 데이터를 원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날짜 확인이 되잖아요. 계속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현장에 갔다는 입증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위원장대리 한정애 저게 2014년 10월 달 자연환경영향검토서 작성 시에 실시한 매목조사 사진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아주 오래된 자료가 아니고, 한 10년 정도 돼서 이미 그 공사도 끝이 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관할 가치가 없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걸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한 아주 드문 사례니까 이것은 보관을 해야지라고 해서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남아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오색삭도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그런데 일단 매목조사표와 관련해서는 20% 이상은, 거의 한 30% 가까이는 소실되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2014년 10월에 했었던

내용인데, 겨우 이제 딱 만 2년 지났는데 이게 일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이미 지금 KEI에서도, 좋습니다. 모눈종이 가지고 했는데, 가서 봤는데 방위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모눈종이를 돌려 보고 저렇게도 돌려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식생조사 하신 것, 제가 한번 환경부에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시점검단이 사업장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팀을 꾸려서 5명이 나가요. 5명이 나가는데 오늘 점검해야 되는 사업장이 많아요. 10개예요. 그래서 다 안 되니까조를 나누자, 그래서 1명이 2개 사업장씩 가자, 10개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장 점검표에 대표단에 해당되는 팀장 이름으로 다 간 걸로 적어요. 이게 거짓입니까, 아니면 참입니까? 이렇게 합니까, 환경부 점검할 때? 지금 식생조사를 3명이 나가서 했는데 3명이 떨어져서 23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식생조사표에 적을 때는 팀장으로 가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다 한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기관에 얘기를 해 봤더니 1명이 다 한 게 아니고요, 3명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했어도 됩니다. 그렇지요? 3명이 아니라 1명이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것은 거짓으로 보고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꾸민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자, 뒤에 모여서 기록을 해서 전산으로 넘겨서 작성을 하니까 그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2014년 10월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매목조사가 원래 환경영향평가 항목도 아니니까 본인들은 그것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그래서 이게 식생조사하고 로테이터 관리하는 게 좀 차이가 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거짓으로 내서 이렇게 되니까 좀 이것을 다르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저희가 11월 2일 날 가서 현장검증을 했고 11월 13일 날 환경단체에서 동일한

지역에 가서 현장검증을 또 대규모 단이 가서 했습니다. 그 2개 결과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그 말은 조사 기준점이나 엄밀성이나 정확성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에서 보느냐 저 각도에서 보느냐, 그 40m를 이렇게 40m로 치느냐 저렇게 40m로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11월 2일하고 11월 13일에 본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잘못된 자료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서 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러 가자 해서 갔던 검증팀들입니다. 검증팀의 자료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차이나는 게 9일밖에 안 납니다. 2년이 난 게 아니고요.

한 9일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누가 중간에 뻥 것도 아니고 9일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11월 2일 날은 물론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211개로 나왔는데, 환경단체가 13일 날 한 것은 333개로 나왔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당단풍나무라고 있습니다, 당단풍나무. 이것은 현장검증 때는 10그루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13일 날 환경단체가 검증한 것은 1그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배가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환경평가서에는 6그루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거짓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엄밀하게 보려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격자를 쳐 놓고 기준점도 제대로 잡고 해 가지고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매목조사를 그렇게까지 하는 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엄밀하게 조사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는 데 필수항목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진짜 다잡아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더 엄밀하게 조사해서 보완해라 할 사항이지, 이걸 니네가 거짓말로 했으니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위원장대리 한정애** 우리 현장검증 한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를 할 건 아니고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일단 우리가 했던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매목조사 결과를 어쨌

든 검증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아실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매목조사라고 하는 항목을 설악산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대조건에 명시까지 해 가면서 넣었을 때는 해당되는 지주 설치되는 위치에 있어서의 식생을 보호할 방안들, 식생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것인데 그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그래서 보완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정애**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서형수 위원님.

○**서형수 위원** 아까 장관님 답변한 중에서 매목 조사가 아니고 식생조사에도 보면 23개 조사, 전부 한 사람이 조사자로 지금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잘 보시면 조사 현장에서, 조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사한 걸 타인이 그걸 하면 다 거짓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매목조사가 아니고 지금 식생조사 23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기준 위배한 거고 그 부분도 엄격하게 보면 거짓 작성이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조사자 본인이 일단 현장에서 작성하고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 분명히 바로잡아 주시고요.

저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20%, 30%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도, 이런 전문가들 같으면 얼마든지 추론해서 현장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좀 없애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지조사, 그 시점에 현지조사에 갔는지에 대한 자료만 달라는 거예요. 해 가지고 제가 10%, 20% 그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자체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면.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아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는 그 당시의 출장복명서 또 실제 출장 간 사람들의 이런 기록들을 다 맞춰 보니까 가지 않고 한 것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서형수 위원** 현장에 갔느냐…… 어떤 실내에서, 밑에서 할 수도 있지요. 현장에 갔는지 현장을 확인해 달라니까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산에 안 올라가고 밑에……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관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생조사는 세 명이 가서 각기 다른 곳을 했는데 죽 묶어서 대표자가 본인이 다 함께 한 것으로 서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복명서로써 같음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河泰慶 위원** 제가 마무리……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서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선수들끼리는 안 가고 다 아는 그런 관행이,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나간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저는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매목조사 보면, 제가 다시 보니까 카메라 종류가 어땡고 니콘 카메라 해 가지고 카메라 모델까지 자세히 써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써 놓은 것만 보면 이것은 카메라로 현장에서 안 찍었으면 써 놓지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아주 프로들은 또 이 이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조사에 가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반드시 남기게끔…… GPS 기기가 차로운반해야 되나요? 손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휴대용으로 간편한 것이면 매목조사도 GPS를 가져갈 것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 가져가는 사람은 앞으로 현장조사 인력에서 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확실히 우려되는 게 제가 사진을 주라고 그랬는데 사진 원본파일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라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관 안 했다 이러면 또 할 말도 없고 따지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진 파일도 의무보관기간을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기간을 준다든

지……

그래서 오늘 나온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하자, 출장비 이것을 어쨌든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면에서 볼 때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정미 위원 지금 추가질의 다 끝났나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거의……

○이정미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GPS 원본하고 본안 표하고 지금 비교 분석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지금 얘기가 된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매목조사는 GPS 자료가 없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왜 없나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혹시 여기 동식물 담당했던 방상원 박사님 오셨나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공공인프라평가실장 방상원 예.

○河泰慶 위원 이정미 위원님은 따로 방문해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河泰慶 위원 이정미 위원님은 따로 방문해서 하시고요. 대충 우리가 짚었던 문제가 또 반복이 될 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그렇기는 한데, 혹시 방상원 박사님께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매목조사 관련해서 초기에 질문하셨던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공공인프라평가실장 방상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대리 한정애 나오셔서……

○河泰慶 위원 그런데 누구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실제 동식물 담당 KEI의 공공인프라평가실장이십니다.

○이정미 위원 그 질문 전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 마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이정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미흡하다와 그 자체가 거짓조사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장관

께 나중에 답변을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공공인프라평가실장 방상원 GPS 좌표를 기재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매목조사 표의 통상적인 양식이 있는데요, 매목조사의 통상적인 양식에는 GPS 좌표를 기재하는 난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식생조사표의 경우에는 GPS 좌표를 기재하는 난이 있어서 기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정미 위원 자료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 자체가 없었을 때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공공인프라평가실장 방상원 GPS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공공인프라평가실장 방상원 아니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GPS 좌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자가 40by40을 8칸으로 격자를 나눕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현지에서 수기로 적정한 위치에다가 수정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로팅(plotting)을 한 것을 저희들이 중첩을 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지주의 설치 위치, 위치 자체는 어쨌든 GPS상으로 설정은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40으로 이렇게 네모를 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중심점은 어쨌든 GPS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올라가서 여기에 지주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공공인프라평가실장 방상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렇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공공인프라평가실장 방상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양군에서 당초에 자연환경검토서 그것을 조사할 때는 지주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간 자연환경검토서,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되었던 거기에 좌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서상에는 그 좌표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

셨습니다.

○河泰慶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의사진행발언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河泰慶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래요. 위원님들도 서로 짹짹하게 하면 안 돼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식생조사표 원본 데이터하고 매목조사표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식생조사표는 좌표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GPS를 가져가야만 되는 거예요, 식생조사표는. 그런데 매목조사표에는 좌표를 여기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다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GPS 좌표를 적는 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현장위치 확인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시행령으로 하면 됩니까, 뭐로 하면 됩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이런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고……

○이상돈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서형수 위원님.

○이상돈 위원 저는 제가 제일 끝에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서형수 위원 저도 정말 갑갑한데요. 과연 GPS 기기나 GPS 데이터 없이 매목조사 하러 간 조사자들이 지주가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올라가기 전에 지금 현재 포인트가 어디라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 당연히 GPS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요. 그다음에 40by40으로 영역 설정해도 요즘 GPS 자료 아니면 포인트를 못 잡습니다. 줄자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거기에 GPS 기기를 안 가져갔다, GPS 자료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GPS 자료가 없으면 정확하게 지주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사전에 미리 설계도상의 지주 위치, 1번부터 있고 상부·하부 위치 자체가 GPS 데이터로 나올 텐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GPS 자료를 당연히 가져가지요. 거기에 대해 GPS 자료를 활용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자꾸 뭔가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이상돈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미시적인 것 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루하게 설악산 케이블카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케이블카 얘기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케이블카를 하려고 그랬지만 내가 아는 한 환경부의 주축이 되는 관료사회랄까 학자들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린다면서 언급한 것이 있지요, 카지노·케이블카·골프장. 일국의 대통령이 케이블카니 골프장이니, 특히 카지노 같은 것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카스트로 공산 혁명가가 죽었지만 카스트로가 무너뜨린 바티사 정권이 카지노 정권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에 카지노·케이블카·골프장이 나왔느냐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 워딩은 최 아무개가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아마도 그것을 볼 것 같으면 방점은 카지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잘 진척이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 얘기가 나오고 환경부가 거기에 휩쓸려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그것을 가결시켜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볼 때 환경부가 정말 이제는 원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논쟁에 이렇게 휘둘러 가느냐, 끝없이 수렁에 빠져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된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답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관료가 답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각 부처 차관들이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그 뜻인가 보다 하고 다 해서 그것을 통과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렇게 온 거라고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 워딩이 누구한테 나왔느냐, 그 뿌리가 거기 있는 거라고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환경부가 원점에서 이것을 다 보고, 이런 미시적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국립공원위의 철학이 뭔가 말이야. 초심으로 돌아가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장관님께 답변을 들으신다

고 했기에 질문을 한 가지 더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용과 그리고 이번에 현지조사 갔을 때 작성표 자체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자연환경평가를 할 때 매목 현지조사에 나가서 그 조사표를 작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작성표를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는 같은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100%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목조사 현장에 나가서 작성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조사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장관님? 그런데 이 두 개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목조사표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출되어 있는 그 조사표가 일치되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매목조사는 제대로 했다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내용을 제출할 때 손을 봤거나 한마디로 뭔가 이 과정에서…… 허위 작성 과정을 거쳤거나 아니면 매목조사표 자체가, 나가서 현장조사 했던 것 그 자체가 엉터리였거나 둘 중의 하나 밖에는 그 이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2번 제주 주변의 40by4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제가 아까 제출드렸던 것 말고…… 예.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것은 지금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닌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 저희는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형수 의원님 실에서도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요, 저희는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장관님께 제출드릴게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저희 자료는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출되어서 그 두 개가 불일치되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보완하겠다고 하는……

○**이정미 위원** 아니, 아니요. 뭘 모든 걸…… 허위 작성하고 잘못된 것을 다 보완하면 됩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을?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니, 그러니까 허위 거짓과 보완의 그 경계가 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마이너하게 되었다고 해서 전체 다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이정미 위원** 장관님, 허위 작성에 대한 판단은 장관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의 전반의 과정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목조사 하나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 심각함이 발생했고 그중에 매목조사도 하나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런데 지적이 된 것을 지금 여기 제가 다 정리했는데요, 지적이 된 게 대부분 뒤에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해서 클리어되지 않았습니까?

○**이정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뭐가 안 됐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자료 다 갖고 있는데요, 9월 27일 이후로 제기된 것.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처음부터 장관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까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매목조사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필수항목이라서 그것을……

아까 하태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록, 서식에 좌표라든지 이런 게 찍혔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인데 이게 필수항목이 아니고, 이번에 매목조사를 한 것은 개략적인 수목 현황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저희는 가장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어느 점검이나 그 어느 서류에서도 법정보호종은 없었다라는 것은 다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큰 목적은 일단 달성을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당초 조사시점과 검증했을 때 시

점들이 다 차이가 나 가지고, 격자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일 날 저희가 현장 검증한 것하고 11월 13일 날 환경단체가 검증한 것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는 시점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평가서 작성지침상 이게 의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는 범정보호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보통 때 하던 표준지보다 작게는 4배 많게는 16배 크기로 넓게 해서 조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런 취지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일부로 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치명적인 부실이나 거짓으로 또 허위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평가서 보완 조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족한 점을 다시 한 번 짝 조사를 해 보라 해 가지고 그 조사결과가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낸 것하고 다시 비교를 해서 다음에 이 평가서 보완 여부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알겠습니다.

저는 식생조사표 역시도 A가 나가서 식생조사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것이 거짓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 사람은 현지에 동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잠시만요, 본부장님께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3명이 나가서, 3명이 여섯 군데를 나눠 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명이 같이 갔는데 그 물질 할 때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식생조사 하고, 그래서 표를 이렇게 나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a지점 가고 이 사람은 b지점 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러면 3명이 계속해서 같이 다녔다는 건가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평가본부장 이영준 예, 가면서 식물 조사하는 사람은 그물질 할 때 옆에서 식물 조사하고 또 곤충 조사하는 사람은 곤충 조사하고, 한 지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러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매목조사 관련해서는 원래 애초에 우리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 매목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했던 취지에 반하는 결과물로 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좀 더 제대로 된 매목조사 결과서 내지는……

위원들께서 지적을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해서 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 산양과 관련해서 사계절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 생태조사와 관련한 조사표를 같이 집어넣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조치가 되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겨서 그것을 제대로 또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관련해서 어찌 보면 지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국립공원, 그리고 다름 아닌 설악산이라고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을 정부에서는 알아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러한 우려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우려로만 끝이 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위원들께서 더 많은 지적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실제 정부가 그 사업을 좀 더 탄탄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아니하는 국립공원으로서 남아질 수 있는 설악산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염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노동위원회가 오색삭도 관련한 사업, 설치가 되기까지 또는 앞으로 보완 절차를 거쳐서 다시 들어오는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서도 다시 재접수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를 거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 병 원	김 삼 화	문 진 국	서 형 수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장 석 춘
조 원 진	하 태 경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조	경
차	관	이	정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윤
환 경 정 책 실 장		이	민
물 환 경 정 책 국 장		김	영
자 연 보 전 국 장		박	천
자 원 순 환 국 장		신	진
기 후 대 기 정 책 관		나	정
상 하 수 도 정 책 관		오	종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이	호
국 제 협 력 관		황	석
감 사 관		주	대
원 주 지 방 환 경 청 장		박	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차	관	고	영
기 획 조 정 실 장		박	중
노 동 시 장 정 책 관		김	경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장	신
고 령 사 회 인 력 정 책 관		박	성
직 업 능 령 정 책 국 장		권	기
산 체 예 방 보 상 정 책 국 장		박	화
기 상 청			
청	장	고	윤
차	장	남	재
기 획 조 정 관		이	우
기 상 서 비 스 진 흥 국 장		유	희
한 국 환 경 정 책 · 평 가 연 구 원			
원	장	박	광
환 경 평 가 본 부 장		이	영
공 공 인 프 라 평 가 실 장		방	상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8. 홍철호 · 김영우 · 백승주 · 이종명 ·

김종대 · 김선동 · 박명재 · 김성태 · 유승민 ·
윤후덕 의원 발의)

11월 21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1. 김철민 · 서영교 · 전해숙 · 김정우 ·
김상희 · 전해철 · 민병두 · 조정식 · 임종성 ·
박남춘 · 김현권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1. 김학용 · 백승주 · 송석준 · 이종명 ·
정태옥 · 김승희 · 김종석 · 박성중 · 이군현 ·
이철규 · 김성태 · 주광덕 · 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2일 회부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1. 22. 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2. 진선미 · 송옥주 · 손혜원 · 윤종오 ·
소병훈 · 유은혜 · 황주홍 · 이상돈 · 장정숙 ·
서영교 · 박남춘 · 박재호 · 김상희 · 김정우 ·
송영길 · 표창원 · 신창현 · 정성호 · 윤관석 ·
박주민 · 김해영 · 김종대 · 이정미 · 박선숙 ·
김관영 · 이해찬 · 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3. 한정애 · 서형수 · 이학영 · 윤호중 ·
송옥주 · 이용득 · 정성호 · 강병원 · 이철희 ·
박재호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3. 한정애 · 신창현 · 송옥주 · 노웅래 ·
서형수 · 유은혜 · 김정우 · 강훈식 · 백재현 ·
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회부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4. 한정애 · 서형수 · 이학영 · 윤호중 ·
윤관석 · 송옥주 · 이용득 · 정성호 · 강병원 ·
변재일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4. 박완주 · 정성호 · 황주홍 · 김정우 ·
김영춘 · 김해영 · 박남춘 · 윤관석 · 이해찬 ·
송영길 · 설훈 · 박찬대 · 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